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92
----------	------

2026년 6월 1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5. 26., 신동원 의원(10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6. 5. 27.

다. 상정일자 : 제336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6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 하도록 하고, 출석요구서의 송달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85조의2 신설)
- 윤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 절차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최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함(안 제8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사항

- 1)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정진영)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85조의2 신설), 심문을 위하여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후단 신설).

2 개최일시 및 장소 등 통지(안 제85조의2 신설)

- 안 제85조의2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85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5조의2(회의 개최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1.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u> <u>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 자</u>
--	---

-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는 의원의 신분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회의 일정 및 장소 등에 관한 사전 통지는 절차적 적법성과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현행 회의규칙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통지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절차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통지대상에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을 포함한 것은 요구권자에게 회의 일정 등을 알림으로써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특별한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출석요구서 송달(안 제87조제1항)

- 안 제87조제1항 후단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87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생 략)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 ----- ----- ----- <u>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최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 현행 규칙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장을 거쳐 관계 의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출석이 요구될 경우 대상자의 소명 준비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석요구서의 송달 기한을 명문화하려는 입법취지는 절차적 권리보장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는 의원의 명예와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상자가 출석요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규칙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은 징계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심사요구의원 및 심사대상

의원에게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¹⁾, 심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²⁾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국회 입법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는 의원의 신분 및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만큼, 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서 송달 기한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1)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2)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동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92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신동원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태수, 남궁역, 신복자,
이성배, 이종환, 이효진,
홍국표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 통지 및 출석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 측면에서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출석요구서의 송달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는 경우,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과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함(안 제85조의2 신설)
-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 절차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함(안 제87조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회의 개최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
2.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제8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개최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